



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(임시회)

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■ 의안번호 제4188호

2024. 8. 27.

교육안전위원회

〈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
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〉

심 사 보 고 서

I.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제4188호
- 발 의 자 : 이순열 의원 외 9명
- 제출일자 : 2024년 8월 16일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9일
- 상정일자 : 2024년 8월 27일
- 의결일자 : 2024년 8월 27일
 -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(안 제2조, 안 제3조)
-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-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(첨부 2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첨부 3)

다. 입법예고 : 2024. 8. 16.~8. 21.(5일간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목적

- 본 개정안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아니라 지하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하도록 조례의 범위 확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, 지하안전관리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법적·행정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하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명칭 변경

-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뿐만아니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지하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「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「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명칭을 변경함

나. 목적, 정의, 책무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)
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과,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,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

다.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(안 제4조)
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, 지하시설물의 실태 점검, 중점관리대상 지정,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하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, 각종 사고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라.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(안 제5조 ~ 제10조)

-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, 해임, 해촉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이는 현행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음
- 안 제5조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를 설치하고,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관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, 중점관리대상의 지정·고시,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
-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을 지질, 환경, 건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, 지하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 지식을 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함
- 안 제7조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, 직무관련 비위사실,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

- 또한, 안 제8조에서는 회의 소집, 의결 방법 등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9조에서는 간사와 서기를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도록 하였음
- 아울러,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
-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규정들로, 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, 구성 방법, 운영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지하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마.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(안 제11조)

-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시장이 지하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행을 감독하고,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

바. 지반침하에 대한 사고조사(안 제12조)

- 안 제12조에서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,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,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음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세종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
- 주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, 관내에서 이뤄지는 지하개발과 상·하수관, 기타매설물 손상, 굴착공사 부실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와 정기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체계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
- 따라서,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제명 변경을 포함한 이번 전부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
- 참고로, 세종시는 신도시 지역의 대형 건물 신축공사와 구도심 지역의 노후된 시설물이 다수 존재하고, 대형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, 흐름 변화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세종시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임
-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지하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지도 및 점검과 계획수립 등 다양한 책무 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

< 세종시 지반침하 발생 현황 >

□ 장소별

| 연번 | 발생 장소 | 발생일 | 지반침하 원인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
| 계 | 20개소 | | | |
| 1 | 조치원읍 서창리 51-1 | 2015-01-23 | 하수관 손상 | 인위적 |
| 2 | 전동면 노장리 706-2 | 2015-08-04 | 하수관 손상 | 인위적 |
| 3 | 조치원읍 상리 79-6 | 2015-08-04 | 기타 매설물 손상 | 인위적 |
| 4 | 한솔동 973 | 2016-07-04 | 맨홀공사 마감 불량 | 인위적 |
| 5 | 장군면 봉안리 520-1 | 2016-07-05 | 배수관 노후 | 자연적 |
| 6 | 조치원읍 죽림리 279-4 | 2016-07-25 | 하수관 공사 | 인위적 |
| 7 | 조치원읍 원리 12-12 | 2016-08-30 | 아스콘 탈락 | 인위적 |
| 8 | 조치원읍 신안리 246-5 | 2016-09-05 | 교통량증가 단차형성 | 인위적 |
| 9 | 전동면 송곡리 138-24 | 2016-09-27 | 교통량증가 단차형성 | 인위적 |
| 10 | 조치원읍 신흥리 88-3 | 2016-11-01 | 우수관거 파손 | 인위적 |
| 11 | 전의면 동교리 197-11 | 2017-07-07 | 하수관 손상 | 인위적 |
| 12 | 조치원읍 봉산리 333 | 2017-08-18 | 하수관 굴착 다짐 불량 | 인위적 |
| 13 | 어진동 어진동 513 | 2018-04-02 | 하수관 손상 | 인위적 |
| 14 | 금남면 부용리 613-6 | 2018-06-04 | 하수관 손상 | 인위적 |
| 15 | 보람동 629-2 | 2018-10-05 | 하수관 손상 | 인위적 |
| 16 | 나성동 350-2 | 2018-11-02 | 지하터파기 공사 | 공사현장 |
| 17 | 나성동 249-2 | 2019-01-31 | 굴착공사 부실 | 공사현장 |
| 18 | 보람동 한누리대로 2144 | 2020-09-07 | 다짐 불량 | 인위적 |
| 19 | 나성동 761 | 2021-02-15 | 재포장지역 침하 | 인위적 |
| 20 | 소담고등학교내(남세종로 326) | 2022-05-31 | 우수관 손상 | 인위적 |

□ 원인별

| 구 분 | 계 | 2023 | 2022 | 2021 | 2020 | 2019 | 2018 | 2017 | 2016 | 2015 |
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계 | 20 | - | 1 | 1 | 1 | 1 | 4 | 2 | 7 | 3 |
| 건축 등 터파기 | 2 | - | - | - | - | 1 | 1 | - | - | |
| 되메우기 불량 | 2 | - | - | - | 1 | - | - | 1 | - | - |
| 상수관 누수 | 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하수관 누수 | 8 | - | - | - | - | - | 3 | 1 | 2 | 2 |
| 우수관 누수 | 2 | - | 1 | - | - | - | - | - | 1 | |
| 기타매설물 | 3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2 | 1 |
| 기타 | 3 | - | - | 1 | - | - | - | - | 2 | - |

IV. 토 론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: 없음

VIII. 기타사항 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1.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2. 관계법령
3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4.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|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|
| 044)300-7510 |

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

**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**

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한다.

제3조(책무) 세종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,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4조(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)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지하안전관리 기본방향
2.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
3.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·지역의 지정·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4.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)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·변경·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·고시
3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지질·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
2.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
3.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

한 사람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,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와 서기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,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지도 및 점검)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행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태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공동 조사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사고 대응 지침을 개선하고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합동 점검할 수 있다.

제12조(사고조사) ①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「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지하안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첨부 2 관계법령

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·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시·도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 관리계획을 수립(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일부 비용 발생 요인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

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)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·변경·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·고시
3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지질·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
2.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
3.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

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,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,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